

의안번호	제 379 호
의 결 연 월 일	2009년 6월 일 (제 281 회)

충청북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발 의 자	이종호 의원 외 7인
발의연월일	2009년 6월 2일

충청북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이종호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379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09. 6. 2.
제 출 자 : 이종호, 임 현, 최미애,
김광수, 이범윤, 정윤숙,
최광옥, 최재옥

개정이유

- 당연직 이사의 임명절차 간소화와 의료원간 인사교류 및 공유 재산 무상사용에 대한 근거조항 마련, 도지사의 지도·감독권한을 구체화 등 의료원 운영상 드러난 미비점을 정비하고 「알기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」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여 도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함

주요내용

- 당연직 이사의 임원추천위원회 추천절차 생략(안 제3조제3항단서)
- 의료 인력의 균형 있는 배치를 위한 의료원 상호 간 인사교류(안 제6조)
- 의료원의 공유재산 무상사용에 관한 근거조항 마련(안 제7조)
- 도지사의 지도·감독 권한 구체화(안 제10조)

참고자료

- 가. 의안전문 : 붙임
- 나. 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
- 다. 관계법령 발췌 : 붙임
- 라. 관련부서 협의 : 의견 없음(보건위생과)

충청북도 조례 제 호

충청북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중 “설립 및 운영조례”을 “**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**”로 한다.

제1조 본문 중 “「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”을 “「**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**」”로 하고, “설립 및”을 “**설립과**”로 한다.

제2조 본문 중 “지방의료원”을 “**지방의료원(이하 “의료원”이라 한다)**”로 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1인, 6인 이상 10인 이하의 이사 및 감사 1인”을 “**1명, 6명 이상 10명 이하의 이사와 감사 1명**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법 시행령 제9조의 의하여 ”를 “「**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시행령**」 제9조에 따라”로 하고 “각호에 해당하는 자가”를 “**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**이”로 하며,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

“다만,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다음 제1호부터 제5호 중 당연직 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 추천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.”

같은 항 제2호 중 “지방의료원”을 “**의료원**”으로 하고, “1인”을 “**1명**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중 “자 1인”을 각각 “**사람 1명**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,

제5항 중 “이사 및”을 “이사와”로 한다.

④ 감사는 도지사가 임면(任免)하며, 도 감사담당부서 공무원을 겸임하게 할 수 있다.

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법 제9조에 따라 의료원에 이사회를 둔다.

② 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라 이사회에서 심의·의결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모두와 같다.

1. 사업이나 투자 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사항
2. 협력병원과의 협약체결에 관한 사항
3.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의료원의 운영과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

제5조제2항제3호 중 “병원 또는”을 “병원,”으로 하고, “연구 또는”을 “연구나”로 하며, 같은 항 제5호 중 “전문가 또는”을 “전문가나”로 한다.

제6조와 제7조를 각각 제8조와 제9조로 하고, 제6조와 제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제8조 본문 중 “의한”을 “따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“공공의료법인 또는”을 “공공의료법인이나”로 하며 “의료원운영의 전부 또는”을 “의료원 운영의 전부나”로 하고, 제9조 본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하며, “지방자치단체 또는”을 “지방자치단체,”로 한다.

제6조(인사교류) 의료 인력의 균형 있는 배치와 지역 의료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지사의 인사교류 권고나 원장의 협의에 따라 의료원 상호간에 인사교류를 실시할 수 있다.

제7조(공유재산의 무상사용) 도지사는 의료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

한 경우 의료원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.

제8조를 제11조로 하고,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제11조 본문 중 “의한”을 “따른”으로 한다.

제10조(지도·감독 등) ① 법 제23조에 따라 도지사는 의료원의 업무를 지도·감독한다.

② 원장은 다음 각 호 모두의 사항에 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1. 의료원의 기구와 정원에 관한 사항
2. 의료원의 인사, 보수, 복무에 관한 사항
3. 의료원의 중요재산의 관리·처분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승인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

제3조와 제5조 본문 중 각 항의 번호와 조문은 각각 띄어 쓴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충청북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</p>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에 따라 충청북도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명칭과 소재지) 충청북도가 설립하는 지방의료원의 명칭과 소재지는 다음과 같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(생략)</p> <p>제3조(임원) ① 임원은 이사장 1인 6인 이상 10인 이하의 이사 및 감사 1인을 두며, 이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③ 이사는 법 시행령 제 9조의 의하여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원장이 임명하되,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포함되어야 한다.</p>	<p>충청북도 지방의료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</p>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충청북도 지방의료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명칭과 소재지) 충청북도가 설립하는 지방의료원(이하 “의료원”이라 한다)의 명칭과 소재지는 다음과 같다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3조(임원) ① 임원은 이사장 1명 6명 이상 10명 이하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며, 이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이사는 「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시행령」 제 9조에 따라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원장이 임명하되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포</p>

(신 설)

1. (생 략)
2. 지방의료원 소재지 보건소장 1인
3.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1인
4. 지역 보건의료계가 추천하는 자 1인
5. 소비자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자 1인

(신 설)

④원장과 원내직원을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.

제4조(이사회) 이사회는 법 제 97제 1항제6호에서 이사회의 심의의결 사항중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된다.

1. 사업 및 투자의 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사항
2. 협력병원과의 협약체결에 관한 사항
3.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의료원의 운영 및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

제5조 ① (생 략)

② (생 략)

1. (생 략)

합되어야 한다

다만,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다음 제1호부터 제5호 중 당연직 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 추천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.

1. (현행과 같음)
2. 의료원 소재지 보건소장 1명
3.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
4. 지역 보건의료계가 추천하는 사람 1명
5. 소비자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1명

④ 감사는 도지사가 임면(任免)하며, 도 감사담당부서 공무원을 겸임하게 할 수 있다.

⑤ 원장과 원내직원을 제외한 이사와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.

제4조(이사회) ①법 제 97에 따라 의료원에 이사회를 둔다.

② 법 제9조제1항제 6호에 따라 이사회에서 심의·의결할 사항은 다음과 각 호의 모두와 같다.

1. 사업이나 투자 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사항
2. 협력병원과의 협약체결에 관한 사항
3.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의료원의 운영과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

제5조 ① (현행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

1. (현행과 같음)

- 2. (생략)
- 3. 의학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국내·외 연구기관, 병원 또는 대학에서 3년 이상의 연구 또는 임상경력이 있는 사람
- 4. (생략)
- 5. 병원경영의 전문가 또는 경영분야의 전문가로서 탁월한 실적이 있는 사람

(신설)

(신설)

제6조(권한 및 운영의 위탁) 법 제 26조제3항에 의한 대학병원 등에 위탁 운영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- 1. 도지사는 공공의료법인 또는 「의료법」 제 3조에서 규정하는 종합병원에 의료원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. 다만, 의료원의 운영을 위

- 2. (현행과 같음)
- 3. 의학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국내·외 연구기관, 병원, 대학에서 3년 이상의 연구나 임상경력이 있는 사람
- 4. (현행과 같음)
- 5. 병원경영의 전문가나 경영분야의 전문가로서 탁월한 실적이 있는 사람

제6조(인사교류) 의료 인력의 균형 있는 배치와 지역 의료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지사의 인사교류 권고나 원장의 협의에 따라 의료원 상호간에 인사교류를 실시할 수 있다.

제7조(공유재산의 무상사용) 도지사는 의료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료원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.

제8조(권한 및 운영의 위탁) 법 제 26조제3항에 따라 대학병원 등에 위탁 운영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- 1. 도지사는 공공의료법인이나 「의료법」 제 3조에서 규정하는 종합병원에 의료원 운영의 전부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. 다만, 의료원의 운영을 위

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
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
을 얻어야 한다.

- 2. (생략)
- 3. (생략)

제7조(대행사업의 비용부담) 의료원
은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기타 위탁
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,
이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,
지방자치단체 또는 위탁자가 부담
한다.

(신설)

제8조(과태료) 법 제29조제1항에 의
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
같이 한다.

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
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
을 얻어야 한다.

- 2. (현행과 같음)
- 3. (현행과 같음)

제9조(대행사업의 비용부담) 의료원
은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그 밖에
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
며, 이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국
가, 지방자치단체, 위탁자가 부담
한다.

제10조(지도·감독 등) ① 법 제3
조에 따라 도지사는 의료원의
업무를 지도·감독한다.

② 원장은 다음 각 호 모두의
사항에 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
얻어야 한다.

- 1. 의료원의 기구와 정원에 관한
사항
- 2. 의료원의 인사, 보수, 복무에
관한 사항
- 3. 의료원의 중요재산의 관리·
처분에 관한 사항
- 4. 그 밖에 승인이 필요하다고
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

제11조(과태료) 법 제29조제1항에
따라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
1과 같이 한다.

관련 법령 발췌

□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

제8조(임원) ① 지방의료원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1인, 6인 이상 10인 이하의 이사 및 감사 1인을 둔다.

② 이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 원장이 임명하고, 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.

③ 이사를 임명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 절차를 거쳐야 한다.

④ 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하되, 추천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.

1.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2인(지역의 보건소장 1인이 포함되어야 한다.)

2. 지역 보건의료계가 추천하는 자 1인

3. 소비자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자 1인

4.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자 1인

⑤ 이사장은 상근으로 하고, 이사장은 원장을 겸임한다.

⑥ 이사장을 제외한 임원의 상근 또는 비상근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⑦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,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
⑧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된 경우 후임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

⑨ 감사는 지방의료원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.

제9조(이사회) ① 지방의료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

1.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

2. 사업계획 및 예산·결산에 관한 사항

3. 조직에 관한 사항

- 4.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
- 5. 인사·보수·복무 등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에 관한 사항
- 6. 그 밖에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4.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자 1인

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.

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
⑥ 이사회 및 감사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.

제23조(지도·감독 등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료원의 업무를 지도·감독하며, 업무·회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.

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료원의 지도·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방의료원의 업무·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.

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.

□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제9조 (임원추천위원회) ① 법 제8조제3항 및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추천 위원회(이하“추천위원회”라 한다)는 지방의료원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되,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. 다만, 지방의료원을 최초로 설립하는 경우의 추천위원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 4인과 해당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자 3인으로 구성한다.

1. 해당 지방의료원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자 4인

2.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 2인

3. 해당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자 1인

② 지방의료원의 임원(비상근 임원을 제외한다)·직원 및 해당 지방자

치단체의 공무원(지방의회 의원을 포함한다)은 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.

③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추천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며,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추천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.

④ 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⑤ 추천위원회는 지방의료원의 원장후보자를 추천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배수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하여야 한다.

⑥ 추천위원회는 지방의료원의 원장 및 이사가 임명되는 때까지 존속한다.